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연금은 하나로 행복은 두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



I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주요내용



II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Q&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I. 연계제도 주요내용

- 01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02 | 연계신청 대상
- 03 | 적용 범위
- 04 | 연계신청 요건
- 05 | 연계반납금의 납부
- 06 | 연계급여 종류
- 07 | 연계급여 수급요건
- 08 | 중복급여의 조정
- 09 | 신청 및 급여 청구 방법



0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①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②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①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은 20년)

②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인 경우,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연계의 기본원칙은 각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는 것으로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 2009.8.7 시행되었고,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연금 수급권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노후생활보장 강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02. 연계신청 대상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2009.8.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① 2007.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② 2009.2.6.(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03. 적용 범위



- 연계를 신청한 자. 단, 연계를 신청한 자가 각 연금법상 수급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계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하고, 연금연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 여부		연계 기간	연금연계법에 의한 급여지급대상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수급권자		
해당	해당	-	X
해당	미해당	20년 이상	○
미해당	해당	20년 이상	○

※ '16.1.1.일부터 연금 수급요건을 완화(20년→10년)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이 개정됨(군인연금은 20년 유지)

04. 연계신청 요건



-연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연금 재직기간 모두 연계할 수 있음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고,

→ 만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연금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 신청을 할 수 없음

②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소멸 시기]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임의계속가입 탈퇴 후 5년 (연령도달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경우는 10년)
직역연금 [*]	퇴직일시금 수급권자는 퇴직 후 5년, 연금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05. 연계반납금의 납부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연계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반납금 납부 고지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직역연금 관리기관이 담당합니다.

-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 납부 횟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연계급여의 수령연령 전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횟수]

재직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분할납부 횟수	24회 이내	48회 이내	60회 이내

-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06. 연계급여 종류

- 연계에 따른 급여에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 연금의 4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내용	지급 기관
연계노령연금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공단
연계퇴직연금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역연금 재직(복무)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금	직역연금공단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공단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직역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직역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각 직역연금 관리기관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액을 지급받으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재직(복무)기간 만큼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액(기본연금액의 40%)에 해당 가입기간을 1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 유족연금액으로 함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연계퇴직 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07. 연계급여 수급요건



- 연계급여는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에서는 연계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사례 : 국민연금 19년 6개월 가입 + 공무원 6개월 재직

→ 국민연금 19년 6개월에 대한 연계노령연금 + 공무원연금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출생연도	~'52년 까지	'53년 ~'56년	'57년 ~'60년	'61년 ~'64년	'65년 ~'68년	'69년 이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08. 중복급여의 조정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중복급여 조정 유형 및 지급액]

본인급여	발생된 중복급여			선택한 급여	지급액
	연금연계법	국민연금법	직역연금법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장애연금		선택에 따라 결정	연계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선택 없음	연계퇴직연금 전액 + 연계퇴직유족연금 50%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전액 + 유족연금 50%
			유족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선택하지 않은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30% + 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	노령연금 전액 +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장애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장애연금	장애연금 전액 + 연계노령유족연금 30%
반환일시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 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퇴역)연금	선택 없음	퇴직(퇴역)연금 전액 + 연계퇴직유족연금 50%

09. 신청 및 급여 청구 방법



- 연계신청 및 급여청구는 가입이력, 연계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이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신청 방법	방법
방문 신청	연계신청서 또는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 신청	연계신청서 또는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대리 신청	- 해외체류, 수감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연계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인터넷 신청	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에서는 연계신청만 가능

-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까지 급여지급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연금관리기관 상담

기관	연락처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군인연금	02) 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	02) 3278-77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II. 연계제도 Q&A



- Q1 | 공무원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가능 여부
- Q2 | 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신청 후 직역에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
- Q3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도 연금 간 이동으로 인정하여 연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Q4 |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직역연금가입자가 되는 경우 연계신청 방법
- Q5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사립학교 재직 중인 자의 연계신청 시기
- Q6 |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합산 가능 여부
- Q7 | 60세 이후 직역연금 근무 중인 경우 각 연금별 지급사유 발생일
- Q8 | 연계신청한 후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연계급여 지급 가능 여부
- Q9 | 연계신청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
- Q10 |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감액하여 수령한 자가 연계신청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반납 기준
- Q11 | 연계신청 후 직역연금 퇴직시 지급시기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여부
- Q12 |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대한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방법
- Q13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

Q1



공무원 장애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가능 여부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공무원연금	'96.11월~'10.7월 (165개월)	공무원연금 장애연금 수급권 발생('10.7월)
국민연금	'10.9월 ~ 현재	임의가입 후 연계신청하여 동일일자로 당연가입 자격 취득

A1

직역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연계신청 가능

- 장애연금과 퇴직급여는 별개의 급여이며,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퇴직급여(퇴직일 시금 또는 퇴직연금)가 지급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이나,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됨

Q2

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신청 후 직역에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신청 후, 다시 직역연금으로 이동했을 때 이동한 직역연금에서 기존 직역연금 재직기간(국민연금 가입 전 이력)에 대해 합산 신청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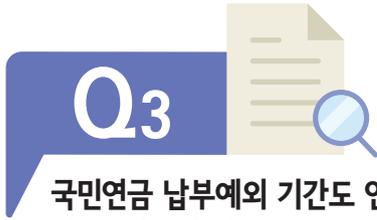
A2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 신청 후, 직역연계에 재임용되었을 때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함

-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 종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 다시 연계신청을 할 수 있음(연금연계법 제8조의2)

합산이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군인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복무)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받고자 할 경우,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토록하고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주는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도 연금 간 이동으로 인정하여 연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국민연금	'01.1.2.~'06.2.28. (2개월 납부, 나머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반환일시금 수령
사학연금	'06.3.1. ~ '09.2.28.	퇴직일시금 수령
국민연금	'09. 3. 1~'18. 2. 28(지역납부 예외) '18. 3. 1~현재(사업장, 1개월 납부)	

Q3-1

법 공포('09.2.6.)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격 상실 후 국민연금 자격 취득으로 이동일 적정 여부

A3-1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에도 가입자 자격은 인정되므로, 연금 간 이동일이 적정함

Q3-2

'06.3.1 전 가입이력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가입기간이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계기간 포함 여부

A3-2

- 연금연계법 제10조제2항에 의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므로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됨

Q4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지역연금가입자가 되는 경우 연계신청 방법

- 직역기관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다시 지역연금 가입자가 될 경우 연계신청 방법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사학연금	'09. 10. 12	퇴직일시금 수령
국민연금	'09. 10. 12 ~ '09. 11. 30	지역취득(납부예외)
	'09. 12. 1 ~ '14. 12. 31	사업장 가입자
공무원연금	15. 1. 1 ~ 현재	재임용

A4

지역연금에 재가입 되었다면 지역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연계신청이 가능

Q5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사립학교 재직 중인 자의 연계신청 시기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국민연금	'88. 5. 2 ~ '08. 2. 29(16년 8월)	반환일시금 미수령
사학연금	'08. 3. 1 ~ 현재	사립학교 재직 중

A5

사립학교 재직 중에 연계신청이 가능함
 다만, 재직 중 연계를 신청하지 않고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아야 함.

Q6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합산 가능 여부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① 공무원연금	'96. 5월 ~ '03. 11월	퇴직일시금 수령
② 국민연금	'03. 12월 ~ '09. 5월	
③ 공무원연금	'09. 5월 ~ '10. 5월	퇴직일시금 수령
④ 국민연금	'10. 5월 ~ 현재	

Q6-1

'07. 7. 23 이후 국민연금 → 공무원 →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였으므로
②, ③, ④ 기간 모두 연계 가능 여부

A6-1

- ②, ③, ④ 기간 모두 연계신청 가능(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제2항)

Q6-2

① 기간을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닌데 합산 가능 여부

A6-2

- 합산 불가

(지역연금 합산은 재직 중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퇴직 중인 대상자는 합산불가)

Q7



60세 이후 직역연금 근무 중인 경우 각 연금별 지급사유 발생일

-아래와 같은 가입(재직)기간을 가지며 '56년생인 자가 연계신청을 하고 사립학교에서 계속 근무 시 각각의 지급사유 발생일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국민연금	'88.1월 ~ '08.3월 (가입기간 216개월)	
사학연금	'12.4월 ~ 현재	

A7

'56년생의 연계급여 수급연령은 61세이므로 연계노령연금(국민연금)은 61세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하고, 연계퇴직연금(사학연금)은 61세 이후에도 재직 시 직역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음

Q8



연계신청한 후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연계급여 지급 가능 여부

- '61.9.10 생인 자가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사망한 경우 연계급여 지급 가능 여부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국민연금	'02. 9월 ~ '07. 8월(5년)	
공무원연금	'07. 9월 ~ '22. 9월(15년1월)	퇴직 시 연계신청
	'22.10월 사망(61세)	

A8

연계급여 지급개시 연령(63세) 도달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연계기간 20년을 충족하였다도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연금연계법 제19조의2에 의해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지급

- ※ 연계급여 수급요건(법 제10조제1항) ① 연계신청 + ② 연계기간 20년 이상 + ③ 수급연령 도달
- ※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은 연계노령(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



연계신청자의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

- 연계신청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급여 지급 여부

A9

연계신청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함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감액하여 수령한 자가 연계신청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반납 기준

- 직역연금 가입 중 형벌의 사유로 감액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민연금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계신청하는 경우 반납금의 산정 기준

A10

감액하여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그대로 반납하면 됨

Q11



연계신청 후 지역연금 퇴직시 지급시기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여부

- '58년 생인 자가 아래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학연금 가입 중에 연계신청을 함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국민연금	'98. 1월 ~ '17. 2월(230개월 가입)	
사학연금	'17. 3월 ~ 현재	65세 정년 예정

Q11-1

각각의 연계(노령, 퇴직)연금 지급시기

A11-1

- 연계노령연금(국민연금)은 '58년생이므로 62세 때부터, 연계퇴직연금(사학연금)은 62세 이후에도 재직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부터 수령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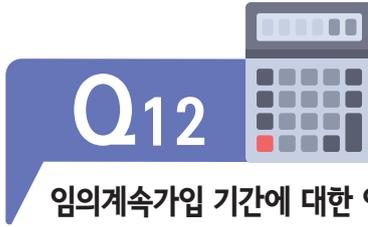
Q11-2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67세^{*}까지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지급 여부

* 58년생의 경우 67세까지임 (∵ 출생연도별 상향조정)

A11-2

-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연계노령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됨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대한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방법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사학연금	'95. 5 ~ '04. 2. (10년 10월 가입)	1953년 2월 생, 퇴직일시금 수령
국민연금	'04. 3. ~ '13. 2. (9년 가입) '13. 3. ~ '13. 12. (10개월 가입)	사업장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사학연금	'14. 1. ~ '15. 12. (2년 가입)	'14.2월 합산 및 연계신청

Q12-1

연계노령연금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연계퇴직연금 청구시 함께 청구할 경우에 연계노령연금 소급지급 가능 여부

A12-1

'53년생은 61세에 연계급여지급사유가 발생되므로 연계노령연금은 연계퇴직연금과 함께 청구시 급여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소급하여 지급됨

※ 연계노령연금은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Q12-2

가능한 급여지급사유 발생일

A12-2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연령이 이미 도달하였으므로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때 지급사유발생, 연계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이 속하는 달(퇴직)인 '15.12월에 사유가 발생하며, 다음 달인 '16.1월부터 급여지급 가능

Q12-3

임의계속가입기간에 대한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방법

A12-3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는 제외되지만, 연계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연금연계법 제11조)

Q13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기관명	가입(재직)기간	기타사항
사학연금	'09. 4. 1 ~ '11. 3. 31 (2년 가입)	퇴직일시금 수령
국민연금	'11. 4. 1 ~ '12. 3. 31 (1년 가입)	
공무원연금	'12. 4. 1 ~ '14. 2. 28 (2년 가입)	퇴직일시금 수령
국민연금	'14. 4. 1 ~	

A13

연계가 가능함.

다만, 직역연금법에 의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함

참고 !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 비교

※ 2018. 12월말 현재

구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군인연금
도입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82년	1963년
관장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방부
집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적용대상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비율비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17%			기준소득월액의 14%
	분담형태	사용자 및 근로자 각 4.5% (지역 9%)	국가 및 공무원 각 8.5%	-교원:국가 3.5%, 법인 5%, 교원 8.5% -사무직원: 법인 8.5%, 직원 8.5%	피지정인(국가) 및 별정우체국직원 각 8.5%
기타주요	급여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장애·유족연금: 장애, 사망 -퇴직연금: 재직기간 10년 이상 *퇴역연금은 복무기간 20년 이상 -장해·상이 및 유족연금: 직무상 재해, 사망			

연금은 하나로 행복은 두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각 연금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www.tp.or.kr

[1588-4110]

국방부 www.mnd.go.kr

[(02) 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www.popa.or.kr

[(02) 3278-7731]

연금은 하나로 행복은 두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